

이 텍스트는 순전히 문서화 도구로 의도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합 기관은 그 내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의 정품 버전은 서문을 포함한 행위는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고 EUR-Lex에서 이용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공식 텍스트는 링크를 통해 직접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B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1/1698

2021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 보완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에 대한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인정을 위한 절차적 요구 사항 제3국의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증과 해당 국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감독 및 통제 및 통제자가 수행해야 할 기타 조치
당국 및 통제 기관

(EEA와 관련된 텍스트)

(OJ L 336 23.9.2021, p. 7)

다음에 의해 수정됨:

	No	공식 저널 페이지	날짜
► M1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3/1686 2023년 6월 30일	L 218	7	5.9.2023
► M2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4/2975 2024년 9월 25일	L 2975	1	2024년 11월 29일
► M3 위원회 위임규정 (EU) 2024/3095 2024년 07월 29일	L 3095	1	9.12.2024
► M4 위원회 위임규정 (EU) 2025/2651 2025년 10월 16일	L 2651	1	23.12.2025



B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1/1698

2021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을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구 인정을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보완

제3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 그룹과 유기농 제품에 대한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 및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이 수행해야 할 통제 및 기타 조치

(EEA와 관련된 텍스트)

통제 인정을 위한 절차적 요구 사항
당국 및 통제 기관

제1조

규정(EU) 2018/848 제46조(2)항(n)에 언급된 요구 사항

1.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위원회가 제공한 모델을 사용하여 규정(EU) 2018/848의 제46조(4)에 언급된 인정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완전한 요청만 고려됩니다.
2. 규정 (EU) 2018/848의 제46조(4)항에 언급된 기술 서류에는 다음 정보가 연합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관한 다음 정보:
 - (i) 이름,
 - (ii) 우편 주소
 - (iii) 전화번호
 - (iv) 이메일 연락처
 - (v) 통제 기관의 경우, 해당 인증 기관의 이름.
 - (b) 이사회 규정에 따른 통합 명명법(CN) 코드와 함께 유기 제품의 표시를 포함하여 관련 제3국 또는 제3국에서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의도된 활동에 대한 개요

(EEC) 제2658/87호⁽¹⁾, 규정 (EU) 2018/848의 제35조(7)항에 명시된 제품 범주별로 배포되며, 위원회의 인정 후 활동 첫 해 동안 규정 (EU) 2018/848의 제45조(1)항 (b)(i)에 따라 연합으로 수입될 예정인 제품.

⁽¹⁾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of 23 July 1987 on the tariff and statistical nomenclature and on the Common Customs Tariff (OJ L 256, 7.9.1987, p. 1).

(c) 다음에 관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대한 설명:

- (i) 구조 및 크기,
- (ii) IT 관리 시스템
- (iii)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점
- (iv) 위임된 활동을 포함한 활동 유형(있는 경우)
- (v) 조직도,
- (vi) 품질 관리

(d) 특히 규정 (EU) 2018/848의 제45조(1)항 (b)(i)에 언급된 인증서의 부여 또는 거부, 정지 또는 철회를 위한 인증 절차.

(e)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인정을 요청한 제3국의 계약 사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규정 (EU) 2018/848에 명시된 생산 규칙 및 통제 조치와 이에 따라 채택된 위임 및 이행 조치의 번역.

(f) (EU) 2018/848 규정 제46조(2)항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특히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인증증 사본인정을 요청하는 모든 범주의 제품을 포괄하는 기관

(g) 이 규정에 따라 수립될 통제 조치의 기능 및 구현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절차. 여기에는 관련된 경우 운영자 그룹에 대한 통제 세부 사항도 포함됩니다.

(h) 이 규정 제22조에 규정된 대로 확립된 불이행의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목록.

(i) ► **M1**-규정 (EU) 2018/848의 제46조(4) 제2항에 언급된 가장 최근의 평가 보고서 사본으로, 인증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유능 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이 규정의 부록 I의 A부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며, 인정 요청서 제출 전 2년 이내에 수행된 증인 감사에 대한 증인 감사 보고서도 포함합니다. 예외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된 인정 요청서의 경우, 증인 감사 보고서는 인정 요청서 제출 전 3년 이내에 수행된 증인 감사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i)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규정(EU) 2018/848 제45조(1)항(a), (b)(i) 및 (c)와 제46조(2)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능력에 대해 만족스럽게 평가되었다는 사실.

(ii)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인정을 요청한 제3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 요건을 이행하고 규정(EU) 2018/848 제46조(2)항 및 본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 (j)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해당 제3국의 관련 당국에 그 활동을 통보하였으며 해당 제3국의 당국이 부과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하는 자료.
- (k) 본 규정 제17조(a)에 언급된 목록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 연합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갖추고 계약 사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l)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위원회가 지정한 독립 전문가에게 모든 사무실 및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관련 제3국에서 통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유지하고 전달하기로 하는 약속.
- (m)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인정을 요청한 제3국 및/또는 제품 범주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기 전 24개월 동안 위원회에 의해 철회되거나 인증 기관에 의해 철회 또는 정지되지 않았다는 진술. 이 요구 사항은 규정(EU) 2018/848 제46조(2a)항(k)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n)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 또는 인증 기관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
3.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위원회가 인정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위원회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오래되었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 요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제2조

인정범위 확대

규정 (EU) 2018/848의 제46조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위원회에서 제공한 모델을 사용하여 인정 범위를 추가적인 제3국 또는 추가적인 제품 범주로 확장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 확장 요청은 제1조(2)에 언급된 기술 문서의 관련 부분을 범위 확장의 대상이 되는 추가적인 제3국 또는 추가적인 제품 범주에 관한 적절한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2장

통제기관 및 통제기관에 대한 감독 수수료

제3조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감독을 위한 일반 요구 사항

1. 규정(EU) 2018/848의 제46조(1)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과 관련한 위원회의 감독 활동은 해당 규정의 제46조(2)항(d)에 언급된 인증 기관의 업무 결과를 고려하여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운영 성과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B

2. 위원회가 수행하는 감독 활동의 강도 및 빈도는 규정(EU) 2018/848의 제46조(6)항에 따라 불이행 위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3. 규정(EU) 2018/848의 제46조(1)항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인정 시점에 기술 서류에 명시된 대로 해당 규정의 제45조(1)항(a), (b)(i) 및 (c)와 제46조(2)항에 명시된 조건 및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EU) 2018/848의 제46조(2)항 및 (6)항과 이 규정에 명시된 통제 요건, 조건 및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과 역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a) 그들이 첫 번째 하위 단락에 언급된 조건 및 기준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 그리고

(b) 운영 절차 및 통제 조치의 효과성 준수.

▼M1

3a. 제2조에 따라 최초 인정일 또는 인정 범위가 새로운 제품 범주로 확장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부속서 I의 B부 1절 및 2절에 따라 수행된 새로운 증인 감사에 대한 새로운 증인 감사 보고서를 인정을 받았거나 인정 범위가 확장된 제품 범주에 대해 제공해야 합니다.

4. 연례 보고서의 목적을 위해 통제 기관은 증인 감사가 이 규정 부록 I의 B부 1절 및 2절과 다음 규칙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M1-

(a) 두 증인 감사 사이의 기간은 최초 인정 또는 최초 범위 확장 후 수행된 첫 번째 증인 감사 날짜부터 시작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b) 인정을 위한 최초 신청을 위해 수행된 증인 감사의 수는 (a)항에 언급된 4년 동안 수행될 총 증인 감사 수를 계산하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c) 추가적인 증인 감사가 한 건 수행되어야 합니다.

(i) 제8조에 언급된 고위험 제품이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제3국에서 2년마다.

(ii) 인정된 제3국 10개국당. 이 추가 증인 감사는 4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d) 특히 다음 요소에 대한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위원회 또는 인증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인 감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i) 검사관의 수

(ii) 운영자의 수

(iii) 운영자가 수행하는 활동 유형

(iv) 인증기관이 수행한 증인 감사의 수

▼B

- (v) 통제 기관에 관한 불규칙성,
- (vi) 인증된 운영자 그룹의 수와 규모,
- (vii) 통제 기관 또는 특정 검사관에 대한 중요한 결과
- (viii) 제품의 특성 및 사기 위험
- (ix) 통제 기관의 이전 연례 보고서에 기초한 위원회 피드백
- (x) 운영자의 사기 의심.
- (xi) 제3국에서 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양 및 인정된 제3국에서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활동.

5.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험 분석 절차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위원회가 인정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감독을 목적으로, 후자는 두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이 최초 인정 또는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제출한 기술 서류의 검토, 인정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 목록의 관리 및 검토,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운영 성과 평가(연례 보고서 포함)를 위한 공동 보고자 역할을 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유기농 생산 위원회에서 각 회원국의 투표 수에 비례하여 회원국 간에 요청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연보

매년 2월 28일까지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연례 보고서는 부록 II에 따라 전년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활동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합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하며, 공식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현장 시험 및 감사

1. 위원회는 각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수행하는 통제의 품질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에 대한 위험 기반 현장 검사 및/또는 감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 및 감사는 관련 인증 기관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검사 및 감사 동안 독립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한 독립 전문가가 작성한 하나 이상의 임시 현장 조사 보고서의 제시를 포함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조사 및 감사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현장 조사 및 감사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 유럽연합 및 제3국에 있는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구, 이들의 아웃소싱 서비스 및 이들의 통제를 받는 운전자 또는 운전자 그룹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방문.
- (b)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구의 구조, 기능 및 품질 관리를 설명하는 관련 문서에 대한 문서 검토
- (c) 직원 파일의 문서 검토, 여기에는 직원의 역량 증거, 교육 기록, 이해 상충 진술 및 직원 평가 및 감독 기록이 포함됩니다.
- (d) 위반 사항 및 불만 처리, 최소 관리 빈도, 검사 수행 시 위험 기반 접근 방식 사용, 후속 방문 및 사전 통지 없이 방문 시행, 샘플링 정책 및 다른 관리 기관 및 관리 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자 또는 운전자 그룹의 파일 검사
- (e) 운전자 또는 운전자 그룹에 대한 검사인 검토 감사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표준 통제 및 위험 평가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마지막 검사 이후 운영자의 상황 변화를 고려한다.
- (f) 증인 감사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검사관이 수행한 실제 현장 검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6조

추적 가능성 검사

위원회는 규정(EU) 2018/848 제46조(1)항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위탁물에 대한 추적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제품의 성분이나 생산 단계를 추적하기 위해 위원회는 해당 제품의 관리에 관여하는 유관 당국이나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가 실시하는 위험 평가, 위원회나 회원국에서 접수한 불만 사항, 또는 무작위로 추적 가능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추적성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 기간은 관련 유관 당국, 통제 당국 및 통제 기관에 적절한 시간 내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제7조

위원회의 임시 요청

위원회는 언제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분석을 토대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임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M4

제8조

고위험 제3국 및 고위험 제품 목록

고위험 제품과 해당 제품의 원산지인 제3국은, 유기 제품 또는 전환기 제품(또는 그 생산)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치명적 또는 반복적인 부적합 사항이나 그 의심을 바탕으로 선정되어, 규정 (EU) 2018/848 제46조 제8항에 따라 채택되는 이행규정에 명시된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해 제3국의 관리당국 및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동일성 검사, 물리적 검사 및 샘플링 대상이 되는 물량 비율도 함께 규정된다.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비율은 100%보다 낮을 수 있으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제3국의 관리당국과 인증기관의 검사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B

제3장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에 대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

제9조

일반 조항

1. 제3국의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의 규정(EU) 2018/848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에서 수행하는 통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규정(EU) 2018/848의 제9조(6)항 및 제28조에 언급된 예방 및 사전 조치의 적용에 대한 검증.
- (b) 보유 자산에 비유기 또는 전환 중 생산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생산 단위 간과 해당 단위에서 생산된 각 제품 간의 명확하고 효과적인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록 및 조치나 절차 또는 준비 사항의 검증, 그리고 유기, 전환 및 비유기 생산 단위에 사용된 물질 및 제품의 검증.

이러한 검증에는 이전 기간이 전환 기간의 일부로 소급적으로 인식된 소포에 대한 검사와 비유기 생산 단위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c) 운영자가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제품을 동시에 수거하거나, 동일한 준비 단위, 구역 또는 건물에서 준비 또는 보관하거나, 다른 운영자 또는 단위로 운반하는 경우, 작업이 장소 또는 시간별로 분리되어 수행되도록 하는 기록 및 조치, 절차 또는 배열을 확인하고, 적절한 세척 조치와 제품 대체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유기 제품과 전환 중 제품을 항상 식별하고,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제품을 준비 작업 전후에 장소 또는 시간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각 구획을 개별 토지 소포에서 수거 센터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B

2. 규정(EU) 2018/848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통제는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공정에 걸쳐 위험 기준에 따라 적절한 빈도로 제3국의 모든 사업자 및 사업자 그룹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EU) 2018/848 제3조(57)항에 정의된 불일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a)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의 유형, 규모(새로 추가된 토지 소포 포함), 구조, 그리고 운영자 그룹에 가입하는 신규 회원의 수.
- (b)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의 활동 또는 운영의 위치 및 복잡성.
- (c)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이 유기농 생산, 준비 및 유통에 관여한 기간.
- (d) 특히 규정 (EU) 2018/848의 준수와 관련하여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통제의 결과.
- (e) 운영자 그룹의 경우, 운영자 그룹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 내부 검사 결과.
- (f) 보유 자산에 비유기적 생산 단위 또는 전환 생산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g) 제품의 유형, 수량 및 가치
- (h)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인한 제품 혼합 또는 오염 위험.
- (나)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규칙에 대한 면제 또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
- (나)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
- (k) 하청 활동
- (l)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인증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을 변경했는지 여부.

(m) 소비자가 오도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

(n) 규정 (EU) 2018/848을 준수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3.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1/771의 제2조(2) 및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1/279의 제4조, 제5조 및 제6조(3)을 적용합니다 *mutatis mutandis*에 제3국의 사업자 그룹에 대한 통제.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임규정 (EU) 2021/771 (2021년 1월 21일)
유기 생산에 대한 공식 통제 체계 내에서 문서 기록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 그리고 운영자 그룹에 대한 공식 통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8/848을 보완하는 규정
(OJ L 165, 2021.5.11, p. 25)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행규정 (EU) 2021/279 (2021년 2월 22일) 유기 생산 및 유기 제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추적성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제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세부 이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8/848을 이행하는 규정 (OJ L 62, 2021.2.23, p. 6)

- ▼B 4.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모든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에 대해 최소한 1년에 한 번 규정(EU) 2018/848 준수에 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준수 검증에는 현장 물리적 검사가 포함됩니다.
5.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4항에 언급된 통제에 최소 10%의 추가 통제를 매년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현장 실제 검사 중 최소 10%는 사전 통지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6. 의심되거나 확립된 불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행된 통제는 5항에 언급된 추가 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매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운영자 그룹의 구성원 중 최소 5%, 그러나 최소 10명의 구성원을 재검사해야 합니다. 운영자 그룹의 구성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모든 구성원을 재검사해야 합니다.
8. 현장의 실제 검사 및 샘플링은 중요 관리 지점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제8조에 언급된 고위험 제품의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대해 매년 최소 2회의 현장 물리적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 물리적 검사 중 하나는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9.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구매 및 수거 센터를 포함하여 여러 생산 단위 또는 건물을 운영하는 경우, 비유기농 제품에 사용되는 구매 및 수거 센터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 단위 또는 건물도 4항에 명시된 통제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0. 규정 (EU) 2018/848의 제45조(1)항 (b)(i)에 언급된 인증서의 배달 또는 갱신은 본 조항에 언급된 준수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제10조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인증 확인

1.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인증을 수락하기 전에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다음을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 다음을 명시한 서명된 선언서 형식의 문서:

- (i) 유기 및/또는 전환 생산 단위에 대한 설명, 해당되는 경우 비유기 생산 단위에 대한 설명 및 규정(EU) 2018/848에 따라 수행해야 할 활동에 대한 설명
- (ii) 규정(EU) 2018/848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유기 및/또는 전환 단위 및/또는 건물 및/또는 활동 수준에서 취해야 할 관련 조치.
- (iii)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에 의한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예방 조치와 생산, 준비 및 유통 단계 전체에 걸쳐 취해야 할 세척 조치.

(b)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동일한 제품 범주에 관하여 동일한 제3국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통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 여기에는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생산, 준비 또는 유통의 다른 단계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c) 운영자 그룹의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운영자 그룹의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동일한 활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

(d)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다음을 약속하는 서명된 약정:

(i) 통제 목적으로 모든 생산 단위의 모든 부분과 모든 건물에 대한 접근 권한과 계정 및 관련 지원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부여합니다.

(ii)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제의 목적

(iii)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결과를 제출합니다.

(iv) 불이행에 대한 의심이 입증되거나, 불이행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제품을 알리고,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환합니다.

(v)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이 변경된 경우 관리 파일의 이전을 수락하고, 유기농 생산에서 철수한 경우 마지막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이 관리 파일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수락합니다.

(vi) 유기농 생산에서 철수하는 경우 즉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통보합니다.

(vii)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하청업체가 서로 다른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통제를 받는 경우 해당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간의 정보 교환을 수락합니다.

(viii) 유기농 생산 규칙에 따라 활동을 수행합니다.

(ix)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수립한 시정 조치의 시행을 수락합니다.

2.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을 인증하기 전에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다음 사항을 검증해야 합니다.

(a)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규정(EU) 2018/848의 제2장, 제3장 및 제4장과 해당 규정의 제36조를 준수한다는 것. 검증에는 최소한 한 번의 현장 물리적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b)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그 활동 중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는 경우,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과 그 활동이 하청된 제3자 모두 공인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서 규정(EU) 2018/848의 제2장, 제3장 및 제4장과 해당 규정의 제36조를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을 받았어야 합니다. 다만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관련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유기 생산과 관련하여 책임을 계속 지고 있으며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 이전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하청된 활동이 활동을 하청한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대해 수행하는 통제 활동의 맥락에서 규정(EU) 2018/848의 제2장, 제3장 및 제4장과 해당 규정의 제36조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관련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다른 요소 외에도, 다른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서 이전에 인증한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을 인증하기 전에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서 전송하는 다음 정보를 평가해야 합니다.

- (a) 국제 표준화 기구(ISO) 표준 ISO/IEC 17065에 언급된 범위 축소, 정지 및 철회 사례를 포함한 인증의 상태 및 유효성.
- (b) 지난 3년 동안 수행된 검사 보고서
- (c) 위반 사항 목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 그리고 모든 위반 사항이 해결되었다는 사실.
- (d)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서 허가된 면제 또는 면제 요청이 처리되고 있는 경우
- (e)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인증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된 정보.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이 규정의 제21조(5)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전송하지 않거나 전송된 정보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다른 통제 수단을 통해 의심을 해소할 때까지 규정 (EU) 2018/848의 제45조(1)항(b)(i)에 언급된 인증서를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4.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지난 2년 동안 철회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에 대해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인정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의해 철회되지 않는 한 인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U) 2018/848 규정 제46조(2a)에 따라 특정 제3국 및 제품 범주에 대한 위원회.

제11조

제어를 위한 방법 및 기술

1.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적용하는 통제 방법 및 기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실제로 검사할 생산 단위 및 건물의 주요 방위와 지리적 위치가 표시된 지도나 스케치가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제공한 대로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b) 적절한 경우, 다음의 검사:

(i)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통제 하에 있는 생산 단위, 장비, 운송 수단, 건물 및 기타 장소.

(ii) 반제품, 원자재를 포함한 동물, 식물 및 상품

상품의 준비 및 생산이나 동물의 사료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 가공 보조제 및 기타 제품, 그리고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된 물질

(iii) 추적성, 라벨링, 프레젠테이션, 광고 및 관련 포장재

(c) 규정(EU) 2018/848 준수 여부 평가에 관련된 문서, 추적 기록 및 기타 기록과 관행 및 절차의 검토. 여기에는 식품, 사료 및 시설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질이나 재료와 함께 제공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d) 운영자 및 직원과의 인터뷰

(e) 샘플링 및 실험실 분석

(f)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이 도입한 통제 시스템의 검토, 여기에는 효과성 평가가 포함됩니다.

(g) 이전 검사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의 조사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취한 조치

(h) 불이행 사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타 조치.

2. 제9조(4)항에 언급된 연간 현장 실사 검사에는 추적성 검사 및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질량 수지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서류 계정 검사 및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관련 요소의 검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3. 추적성 검사 및 물질수지 검사의 목적을 위해 검증 대상 제품, 제품 그룹 및 기간의 선택은 관리 당국 또는 관리 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4.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관련 요소 외에도 추적성 검사는 적절한 문서에 의해 정당화되는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식 및 재무 기록 포함:

▼B

- (a)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다른 경우 제품 소유자, 판매자 또는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 (b) 제품의 위탁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다른 경우 구매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 (c) 규정 (EU) 2018/848 제45조(4)에 따라 채택된 시행 조치에 따른 공급자 인증서.
 - (d) 규정 (EU) 2018/848 부록 III 2.1항 첫 번째 문단에 언급된 정보.
 - (e) 적절한 로트 식별
 - (f) 가공업체의 경우, 내부 추적을 허용하고 성분의 유기 상태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
5. 질량 수지 점검은 해당되는 경우 재고 및 재무 기록을 포함한 적절한 문서로 정당화된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 (a) 해당 부서에 배달된 제품의 성격 및 수량, 해당되는 경우 구매한 재료의 특성 및 수량, 해당 재료의 용도, 해당되는 경우 제품의 구성.
 - (b) 현장 실제 검사 시점을 포함하여, 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의 성격 및 수량
 - (c) 운전자 또는 운전자 그룹 단위에서 위탁자의 건물 또는 보관 시설로 운송된 제품의 성격 및 수량.
 - (d) 제품을 보관하거나 물리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제품을 사고 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의 경우, 사고 파는 제품의 성격 및 수량.
 - (e) 전년도에 획득, 수집 또는 수확된 제품의 수확량.
 - (f) 당해 연도에 획득, 수집 또는 수확된 제품의 추정 또는 실제 수확량.
 - (g) 당해 연도 및 전년도에 관리된 가축의 수 및/또는 무게.
 - (h)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손실, 양의 증가 또는 감소.
- (나) 유기농 및 비유기농 제품을 포함한 지주 회사의 총 생산량입니다.

제12조

샘플링, 샘플링에 사용되는 방법 및 샘플 분석을 위한 실험실 선택

1.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은 유기농 생산을 위한 허가받지 않은 제품 및 물질의 사용을 검출하기 위해, 유기농 생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 기술을 점검하기 위해, 또는 유기농 생산을 위한 허가받지 않은 제품 및 물질에 의한 잠재적 오염을 검출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 ▼B
2.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통제 하에 있는 개별 운영자 수의 최소 5%에 대한 샘플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운영자 그룹의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각 그룹 구성원의 최소 2%에 대한 샘플링을 수행합니다.
3. 샘플을 채취해야 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 그룹의 선택은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를 고려하여 유기 생산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4.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샘플링 비율 외에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유기농 생산을 위한 허가받지 않은 제품 및 물질 또는 기술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샘플링 없이도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제8조에 언급된 고위험 제품의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 조의 2항 및 3항에 명시된 샘플링 비율 외에도 매년 최소한 한 번의 작물 현장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이 샘플은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평가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물질의 잠재적 사용을 감지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현장의 작물에서 채취해야 합니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유입되는 원료 또는 중간 제품 또는 가공 제품의 관련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6.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사용되는 실험실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a) 해당 기관은 '시험 및 교정 연구소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에 관한 ISO 표준 ISO/IEC 17025의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공인 연구소입니다.
 - (b) 해당 인증기관이 국제실험실인증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의 서명국인 경우
 - (c) 그들은 분석 및 시험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샘플이 항상 인증 범위에 포함된 관련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d) 잔류 살충제 테스트와 관련하여, 그들은 연합의 조정된 다년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모니터링되는 살충제 잔류물 목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가스 및 액체 분광법에 대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규정 (EU) 2019/533 (4).
7.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샘플링 작업을 위원회가 인정한 다른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또는 '시험 및 교정 연구소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에 관한 ISO 표준 ISO/IEC 17025에 따라 인증된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행규정 (EU) 2019/533 (2019년 3월 28일)

식물 및 동물 유래 식품에 존재하는 농약 잔류물의 최대 잔류허용기준(MRL) 준수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농약 잔류물 노출을 평가하기 위하여 2020년, 2021년 및 2022년에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다년도 공동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OJ L 88, 2019.3.29, p. 28)

제13조

문서화된 통제 절차

1.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에 대한 통제를 수행 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한 진술

(b) 직원의 업무, 책임 및 의무

(c) 샘플링 전략, 절차 및 방법론, 실험실 분석, 시험 및 해석과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을 포함한 통제 방법 및 기술.

(d) 다른 통제 기관, 다른 통제 기관 및 위원회와의 협력 및 소통.

(e)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현장 물리적 검사 및 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f) 샘플링 방법과 실험실 분석, 테스트 및 진단 방법의 적절성 검증

(g) 통제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타 활동 또는 정밀 검사관 교육 및 역량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h) 운영자 그룹의 경우 내부 통제를 위한 시스템의 효과성.

2.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서 단점이 발견되는 모든 경우에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b) 제1항에 규정된 문서화된 절차를 적절한 경우 업데이트합니다.

제14조

통제의 서면 기록

1.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규정(EU) 2018/848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각 통제에 대한 서면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인증을 결정할 날로부터 5년 동안 이러한 기록을 보관 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에는 특히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통제 목적에 대한 설명

(b) 적용되는 통제 방법 및 기술

(c) 특히 이 규정의 제11조 및 제12조에 열거된 요소를 검증한 결과를 포함한 통제 결과

(d) 관련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다음의 결과로 취해야 하는 조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수행하는 통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마감일이 표시되어 있음.

▼B

2. 서면 기록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검사 대상 회원이 해당 서면 기록의 수령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의 사본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검사 대상 회원이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15조

조류 및 양식 동물 생산에 대한 특정 관리 요구 사항

1. 규정 (EU) 2018/848 제10조(2)항에 명시된 전환 기간의 시작을 결정하기 위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조류 또는 양식 동물을 생산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이 관련 활동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2.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조류 또는 양식 동물의 유기 생산이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3부 1.1항에 따라 오염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해당 제3부 1.2항에 따라 적절한 분리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규정 (EU) 2018/848 부속서 II의 제3부 3.1.3.1(c) 항목의 목적을 위해,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은 사료의 식물 분획이 유기농이고 수생 동물에서 유래한 사료 분획이 유기 양식업 또는 2009년 FAO의 해양 포획 어업에서 생산된 어류 및 수산제품의 생태 라벨링 지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인증된 어업에서 유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규정 (EU) 2018/848 부록 II 제3부 3.1.4.2(e) 항목의 목적을 위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모든 처리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처리가 해당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규정 (EU) 2018/848 부속서 II 제3부 3.2.1항의 의미 내에서 야생 종자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해당 지점의 (a), (b) 및 (c)항이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16조

연합으로 수입할 예정인 화물의 검증

1. 관련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EU 규정 2018/848 및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EU로 수입하려는 위탁물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 검증에는 체계적인 서류 검사와 위험 평가에 따라 적절한 경우 위탁물이 제3의 수출국 또는 원산지를 떠나기 전에 물리적 검사가 포함됩니다.
2.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관련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해당 제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또는

▼B

(b) 최종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이 해당 제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체와 다른 경우, 규정(EU) 2018/848 제3조(44)항에 정의된 최종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

관련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해당 제품과 해당 제품이 원산지인 제3국 또는 해당되는 경우 준비 목적을 위한 마지막 작업이 수행된 국가에 대해 규정 (EU) 2018/848의 제46조(1)항에 따라 인정되어야 합니다.

(b) 위탁물에 포함된 제품의 양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서 수행한 평가에 따라 각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의 질량 수지 검사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c) 해당 제품의 관련 운송 서류 및 상업 서류(송장 포함)

(d) 가공 제품의 경우, 그러한 제품의 모든 유기 성분은 제3국에서 인증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에 의해 생산되었거나 규정 (EU) 2018/848의 제46조(1)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의해 생산되었거나 규정 (EU) 2018/848의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인정된 제3국에 의해 생산되었거나 해당 규정에 따라 연합에서 생산 및 인증되었습니다.

해당 서류 검사는 규정 (EU) 2018/848의 제45조(1)항 (b)(i)에 언급된 증명서, 최신 검사 기록, 해당 제품의 생산 계획 및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이 보관한 기록, 이용 가능한 운송 서류, 상업 및 재무 문서, 그리고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문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 문서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4. 제1항에 언급된 물리적 검사에 앞서 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제9조(2)에 열거된 관련 기준

(b) 유기농 제품을 보관하거나 물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러 사업자가 제품 유통망에 참여하는지 여부

(c) 제8조에 언급된 고위험 제품

(d)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관련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기준.

5. 대량의 유기농 제품으로 이루어진 위탁품의 경우, 관련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무역 통제 및 전문가 시스템(TRACES)에서 여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3의 원산지 또는 수출국에서 연합으로의 여행 중에 사용될 모든 건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M2-제8조에 언급된 고위험 제품의 위탁에 대해 관련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언급된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비율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대표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또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운송 및 상업 문서, 송장을 포함하여 운전자 또는 운전자 그룹과 제품의 추적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위원회 또는 회원국의 유능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 추적 가능성 문서와 샘플링 분석 결과를 수입자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과 위탁물이 검증된 회원국의 유능한 당국에 보내야 합니다.

▼B

6. 제8조에 언급된 고위험 제품의 화물(consignments)에 대해서는, 관련 관리당국 또는 인증기관이 제8조에서 언급된 이행규정에 따라 정해진 적용 비율에 따라 물리적 검사와 함께 최소 1개의 대표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

또한, 관리당국 또는 인증기관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완전한 추적성 문서를 보유해야 하며, 여기에는 송장 등 상업 문서와 운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의 관할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관리당국 또는 인증기관은 이러한 추적성 문서와 샘플 분석 결과를 수입자의 관리당국 또는 인증기관 및 해당 화물이 검증되는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7. 불이행 혐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또는 회원국의 유관 당국은 관련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해당 위탁물이 속한 유기 생산 체인의 모든 사업자 및 모든 사업자 그룹과 그들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목록을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통제 기관, 통제 당국이 수행해야 할 기타 조치

제17조

공개될 운영자 목록 및 기타 관련 정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다음 정보를 최소한 하나의 연합 공식 언어로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a) 다음을 포함하는 인증 운영자 및 인증 운영자 그룹 목록:

(i)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의 이름 및 주소.

(ii) 운영자 그룹의 경우 그룹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회원 수.

(iii) 특히, 인증서 번호, 인증이 적용되는 제품 종류, 인증의 상태 및 유효성을 포함한 인증서 관련 정보. 여기에는 ISO 표준 ISO/IEC 17065에 언급된 범위 축소, 정지 및 철회 사례가 포함됩니다.

(b) 통제 기관의 경우, 해당 인증 기관이 발급한 최신 인증 인증서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여 해당 인증에 대한 최신 정보.

(a) 항목에 언급된 목록은 인증 상태가 변경된 후 즉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철회의 경우 (a)(iii) 항목에 언급된 정보는 철회 후 5년 동안 목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B

제18조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의 데이터베이스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의 최신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이름 및 주소. 운영자 그룹의 경우, 그룹의 규모, 그룹 각 구성원의 이름 및 주소
- (b) 인증 범위, 인증 번호, 인증 상태 및 유효성에 관한 정보
- (c) 전환 중(전환 기간 포함)이거나 유기적인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상태.
- (d) 제9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의 위험 수준.
- (e) 인증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의 통제 하에 있는 하청 활동의 경우, 하청된 제3자 또는 제3자들의 이름 및 주소.
- (에프) 모든 생산 단위와 건물의 지리적 좌표와 표면적
- (g) 검사 보고서 및 샘플링 분석 결과, 그리고 위탁물에 대해 수행된 통제를 포함하여 수행된 기타 통제의 결과.
- (h) 불이행 및 적용된 조치
- (i) 제20조(1)에 언급된 시스템을 통한 통지▼
- (j) 이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허용된 면제 및 관련 지원 문서
- (k) 통제 기관 또는 통제 당국이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

정보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19조

정보 요구 사항

▼M1

1.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승인 후 적절한 시기에, 늦어도 30일 이내에 기술 문서의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 제3조(3a)에 언급된 새로운 증인 감사 보고서의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B

2.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제3국에서의 통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유지하고 위원회 또는 회원국의 유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달해야 합니다.

▼B

3. 규정 (EU) 2018/848 제46조에 따른 인정 요청과 관련된 지원 문서 및 이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 문서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통제가 이루어진 해 또는 규정 (EU) 2018/848 제45조(1)항 (b)(i)에 언급된 인증서와 서류 증거가 전달된 해 이후 5년 동안 위원회와 회원국의 처분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제20조

정보 교환을 위한 시스템 및 절차

1.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위원회, 다른 통제 기관 및 다른 통제 기관, 회원국 및 관련 제3국의 유관 당국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유기 농업 정보 시스템(OFIS)을 사용해야 합니다.
2.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위원회 및 기타 통제 기관과 통제 기관과의 적시 정보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3. 규정(EU) 2018/848의 제46조에 규정된 문서 또는 절차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 및 이행 조치에서 해당 절차의 하나 이상의 단계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명 또는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의 통신을 위해 설정된 컴퓨터 시스템은 각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절차 단계를 포함하여 문서 내용의 무결성이 변경될 수 없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위원회 결정 2004/563/EC, Euratom⁽⁵⁾.

제21조

위원회, 통제 기관, 통제 기관 간의 정보 교환

1.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유기농 또는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일치 의심 사항에 대해 위원회, 다른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 회원국 및 관련 제3국의 유관 당국과 즉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2.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이행 규정(EU) 2021/279의 제9조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수입 유기농 또는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심 또는 확립된 불일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이 규정의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 규정의 부록 III에 명시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위원회와 최초 통보(통지 회원국)를 보낸 회원국에 알려야 합니다.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취해진 조치 및 대책에 대해 알리고 통보 회원국에서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결정 2004/563/EC, Euratom (2004년 7월 7일) 집행위원회 절차 규칙(Rules of Procedure)을 개정 하는 결정(OJ L 251, 2004.7.27, p. 9)

3. 통보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통보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 및/또는 그 하청업체가 서로 다른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통제를 받는 경우, 해당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각자의 통제 활동이 적용되는 작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5.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 및/또는 하청업체가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구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구는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구에 해당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통제 파일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구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구에 해당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통제 파일과 제14조에 언급된 서면 기록, 인증 상태, 불이행 목록 및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구가 취한 해당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보고서에 언급된 불일치 사항이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의해 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추적성 검사 및 질량 수지 검사를 받는 경우,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이러한 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제22조

불이행 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1. 규정 (EU) 2018/848의 제29조(1), (2) 및 (3) 및 규정 (EU) 2021/279의 이행 제2조에 언급된 조치 외에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다른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포함하여 입증된 정보를 의심하거나 수신하는 경우, 규정 (EU) 2018/848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제품이 해당 제품을 연합 내 시장에 출시할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될 예정이지만 유기 생산과 관련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운영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규정 제27조에 따른 불이행 의심:

(a) 규정 (EU) 2018/848 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채택된 위임 또는 이행 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즉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제품의 내구성과 사례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b) (a) 항목에 언급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을 유기농 또는 전환 제품으로 연합 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임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B

2. 제1항(a)에 언급된 조사 결과 유기 또는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일치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은 유기 또는 전환 중 제품으로 사용 및 라벨링이 허용됩니다.

3.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확립된 불이행의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목록을 개발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 목록은 이 규정의 부록 IV에 명시된 요소를 기반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규정(EU) 2018/848의 특정 규칙 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채택된 위임 또는 이행 행위와 관련된 불이행 목록. 해당 목록에는 최소한 이 규정의 부록 IV의 B부에 나열된 불이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이 규정 부록 IV의 A 부분에 명시된 대로 위반 사항을 경미, 중대, 중대한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때 최소한 다음 기준을 고려합니다.

(i) (EU) 2018/848 규정 제28조(1)항에 언급된 예방 조치의 적용, 이 규정 제10조(1)항(a) (ii)에 언급된 실질적 조치 및 이 규정 제11조(1)항(f)에 따라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수행하는 자체 통제의 신뢰성.

(ii) 유기제품 또는 전환제품의 무결성에 미치는 영향

(iii) 공급망에서 영향을 받는 제품을 찾아내는 추적 시스템의 능력과 유기농 생산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연합 내 시장에 출시하는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iv)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이전 요청에 대한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응답.

(c) 각 불이행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

4.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규정(EU) 2018/848 제29조(1)항(a)에 언급된 조사 결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23조

불이행 시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1.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유기 또는 전환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받지 않은 제품, 물질 또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비유기농 제품과 혼합하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 외에도 제3국에서 수입하여 유럽연합 내 시장에 출시하려는 제품의 전체 로트 또는 생산 범위의 라벨 및 광고에 (EU) 2018/848 규정 제4장에 명시된 유기 생산에 대한 언급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B 2. 불이행이 확인되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불이행의 원인 및 범위를 파악하고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b)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불이행 사항을 시정하고 그러한 불이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때,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위반 사항의 성격과 준수와 관련된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과거 기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본 조 제2항에 따라 행동할 때,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규정(EU) 2018/848 및 해당 규정에 따라 채택된 위임 및 이행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이 규정 제22조(3)항에 언급된 조치 카탈로그 적용
- (b)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자체 통제 빈도를 늘리도록 보장합니다.
- (c)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특정 활동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강화된 통제 또는 체계적 통제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4. 심각하거나 반복적 또는 지속적인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2항 및 3항에 규정된 조치 외에도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유기 생산과 관련된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연합 내에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EU) 2018/848 제45조(1)항(b)(i)에 언급된 해당 인증서가 적절한 경우 정지되거나 철회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 또는 조치에 관한 결정과 그 결정의 이유를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4조

이전 기간의 소급적 인정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검사

1. 규정(EU) 2018/848 제10조(3)항(b)의 목적을 위해 전환 기간의 일부로 이전 기간을 소급적으로 인정하기 전에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운영자가 토지 소포가 규정(EU) 2018/848에 따라 유기 생산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로 최소 3년 동안 처리되지 않았거나 오염되지 않은 자연 또는 농업 지역임을 증명하는 다음 문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a) 소급적 인정 요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각 토지 소포를 명확히 식별하는 지도와 해당 토지 소포의 총 표면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경우 진행 중인 생산의 성격 및 규모와 지리적 위치 좌표에 대한 정보.

▼B

(b)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소급 인정 요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관련 문서.

2. 또한, 통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사후 인정 요청의 적용을 받는 토지 소포가 최소 3년 동안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서류 증거에 근거한 자세한 위험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요청과 관련된 총 표면적의 크기와 요청의 적용을 받는 각 토지 소포에서 해당 기간 동안 수행된 농업 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위험 분석에 대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b) (a)항에 언급된 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 각 토지 소포의 토양 및/또는 식물 샘플을 채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오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토지 소포도 포함됩니다.

(c) 소급적 인정 요청 대상 토지 필지를 포함하여 운영자에 대한 물리적 검사 후, 수집된 정보의 일관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필지 사진을 포함한 연합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경작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운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2항에 명시된 단계를 완료한 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최종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서면 보고서에는 이전 기간을 전환 기간의 일부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최종 서면 보고서에는 또한 해당 토지 소포에 대해 유기적으로 간주되는 시작 기간과 이 기간의 소급 인정으로 혜택을 받는 토지 소포의 총 표면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4.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부여된 모든 소급적 인정에 대해 위원회, 회원국 및 통제 기관의 경우 인증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부여된 각 소급적 인정에 대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3항에 언급된 최종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부여된 소급적 인정이 적용되는 운영자가 해당 인정과 관련된 서류 증거 및 해당 인정이 적용되는 토지 소포의 사용에 대한 서류 증거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25조

비유기식물 생식재료 사용 허가

1.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1부 1.8.5.2항에 명시된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 사용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기 전에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다음 정보를 평가하고 부여된 각 면제에 대한 정당성을 작성해야 합니다.



(a) 학명 및 일반명(일반명 및 라틴어명)

(b) 다양성

(c) 해당 씨앗의 총 중량 또는 식물 수.

(d) 유기 또는 전환 식물 생식 물질의 가용성

(e) 규정 (EU) 2018/848 부록 II 제1부 1.8.5.2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운영자의 문서 또는 진술서.

2. 항목에 명시된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 사용에 대한 각 승인에 대해 (EU) 2018/848 규정 별지 II 제1부 1.8.5.2에 따라,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 규정 제4조에 언급된 연례 보고서에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26조

비유기동물 및 양식어 미성년자 사용에 대한 면제

1.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2부 1.3.4.3 및 1.3.4.4항에 따라 비유기 가축 종(소, 말, 양, 염소, 돼지 및 사슴, 토끼 및 가금류)의 사용에 대한 면제를 허가하기 전에,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다음 정보를 평가하고 각 면제에 대한 정당성을 작성해야 합니다.

(a) 과학적 및 일반명(일반명 및 라틴어명, 즉 종과 속)

(b) 품종 및 계통,

(c) 생산 목적: 육류, 우유, 계란, 이중 목적 또는 번식.

(d) 동물의 총 수

(e) 관련 유기 가축 종의 가용성

(f) 규정 (EU) 2018/848 부록 II 제2부 1.3.4.3 및 1.3.4.4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영자의 문서 또는 진술서.

2. 비유기 가축 종(소, 말, 양, 염소, 돼지, 사슴, 토끼, 가금류) 각각에 대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 규정 제4조에 언급된 연례 보고서에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2부 1.3.4.3 및 1.3.4.4항에 따라 허용된 면제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3.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3부 3.1.2.1항에 따라 비유기 양식어 미성숙어의 사용에 대한 면제를 허가하기 전에,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다음 정보를 평가하고 각 면제에 대한 정당성을 작성해야 합니다.

(a) 종 및 속(일반명 및 라틴어명)

(b) 해당되는 경우 품종 및 계통

(c) 유기농으로 판매 가능한 생활 단계(예: 알, 새끼, 어린 새끼)



(d) 운영자가 추정한 이용 가능한 수량

(e) 청소년의 총 수

(f) 관련 유기 양식 종의 가용성

(g) 규정 (EU) 2018/848의 부록 II 제3부 3.1.2.1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운영자의 진술서.

4.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3부 3.1.2.1항에 따라 비유기 양식어 미성숙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된 각 면제에 대해 통제당국이나 통제 기관은 이 규정 제4조에 언급된 연례 보고서에 관련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27조

비유기농 농업재료 사용에 대한 임시 허가에 대한 보고가공된 유기농 식품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해당 규정의 제25조(4)에 따라 가공 유기 식품에 대한 비유기 농업 성분의 사용에 대해 부여된 모든 임시 허가에 대해 위원회, 회원국, 인증 기관 및 규정(EU) 2018/848 제46조(1)에 따라 인정된 기타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에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전용 양식으로 제시된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허가가 규정(EU) 2018/848 제25조(1)에 따라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5장

재난에 대한 규정(EU) 2018/848의 면제

제28조

재난 상황 인식

규정(EU) 2018/848의 제22조(1)항 및 제45조(3)항에 언급된 예외적 생산 규칙의 목적을 위해, '악조건'의 기후 현상, '동물 질병', '환경적 사고', '자연 재해' 또는 '대재앙적 사건'에서 비롯된 상황이 대재앙적 상황으로 적격을 갖추려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상황이 발생한 제3국의 관련 당국이 발행한 성명을 근거로 상황을 대재앙적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가능한 경우). 그러한 성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그러한 인정은 대재앙적 상황을 정당화하는 공식 기관이 제공한 데이터 근거로 합니다.

제29조

면제의 적용조건

1. 제28조에 따른 인정 이후, 관리당국 또는 인증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영향을 받은 운영자를 식별한 경우 또는 해당 개별 운영자나 운영자 그룹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임규정 (EU) 2020/2146 제3조에 규정된 관련 예외 및 그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해당 예외와 조건은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a) 제한된 기간 동안 적용되며,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예외 적용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기 생산을 지속하거나 재개하기 위한 목적일 것

(b) 특정하게 영향을 받은 생산 유형 또는 해당되는 경우 특정 토지 구획에 한정될 것

(c) 해당 개별 운영자 또는 관련 운영자 그룹의 구성원에게 적용될 것

2. 제1항에 언급된 면제의 적용은 면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규정(EU) 2018/848 제45조(1)항(b)(i)에 언급된 인증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련 운영자 또는 운영자들이 면제가 부여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구는 제20조(1)에 언급된 시스템을 통해 이 규정에 따라 부여된 면제 사항을 위원회, 회원국 및 통제 기관의 경우 인증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관련 운영자 이름, 면제 기간, 생산 유형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토지 소포, 면제에 대한 정당성을 명시하고 제28조에 언급된 제3국의 관련 기관의 성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그러한 성명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인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허가된 면제가 적용되는 모든 운영자가 허가된 면제와 관련된 서류 증거와 면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해당 면제의 사용에 대한 서류 증거를 보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들이 허가된 면제의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6장

GENERALAND 최종 조항

제30조

규정(EU) 부록 II에 있는 유능 당국 및 회원국에 대한 참조

2018/848

1. 규정(EU) 2018/848 부록 II의 다음 항목에서 유능 당국에 대한 언급은 해당 규정의 제46조(1)항에 따라 인정된 통제 당국 및 통제 기관을 언급하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B

(a) 제1부 1.7.2항 및 1.7.3항의 첫 번째 문단.

(b) 제2부의 1.3.4.3, 1.3.4.4.3, 1.6.7, 1.7.5, 1.7.8, 1.9.3.1, 1.9.4.1 및 1.9.4.2항.

(c) 제3부의 3.1.2.1항 및 3.1.3.1항.

제2부 1.9.4.1항에 언급된 정보는 위원회에만 전송되어야 합니다. 2. 규정(EU) 2018/848 부록 II 제 2부 1.9.4.4(c)항에 언급된 회원국은 해당 규정의 제46조(1)항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 관을 언급하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30a조

▼M3

제3국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인증 대기 관련 예외

1. 본 규정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 소재한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인증이 본 규정 제9조 제10항 및 제10조, 그리고 위임집행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1378 제1조에 따라 관련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심사 하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기 중인 경우, 해당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해당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EU로 수입하고자 하는 선적물(consignments)에 대한 검증을 2007년 EU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제 33조 제1항에서 언급된 규정 준수를 기준으로 2025년 10월 15일까지 수행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증 이후, 관련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위임 위원회 규정(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306 제4조에 따라 검사 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를 발급해야 한다⁽⁶⁾.
3. 제1항에서 언급된 인증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기 중인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게, 규정(EC) No 834/2007 제33조 제3항에 따라 인정된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한 문서 증거(documentary evidence)는 유효 기간 종료 시까지 유효하며, 단 2025년 10월 15일을 넘을 수 없다.

(6) 2021년 8월 19일자 위임집행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1378: 제3국에서 유기농 및 전환 중 제품의 EU 수입과 관련된 사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에 관한 특정 규칙을 규정하고, 규정(EU) 2018/848에 따라 인정된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 목록을 확립함.

(7) 2007년 6월 28일자 EU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유기농 제품 생산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 및 기존 규정(EEC) No 2092/91 폐지.

(8) 2021년 10월 21일자 위임 위원회 규정(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306: EU 2018/848 규정을 보충하며, EU 수입용 유기농 및 전환 중 제품 선적물(consignments)에 대한 공식 검증 규칙과 검사 증명서 관련 규정 포함.

▼ **M3**

4. 제1항에 언급된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본 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항 (c)호, 제14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및 부속서 IV Part B에서 규정 (EU) 2018/848의 준수에 대한 언급은, 규정 (EC) No 834/2007 제33조 제1항에 언급된 규정의 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규정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 및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 (EU) 2018/848 제45조 제1항 (b)(i)에 따른 인증서에 대한 언급은, 규정 (EC) No 834/2007 제33조 제3항에 따라 인정된 관리당국 및 인증기관이 제1항에 언급된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에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한 증빙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B****제31조****발효 및 적용**

본 규정은 유럽연합 공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 규정은 그 전체에 있어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부록 I

제1조(2)(i)에 언급된 평가 보고서의 내용

A부

제1조(2)항(i)에 언급된 평가 보고서는 문서 및 기록 검토 보고서, 현장 평가 보고서 및 증인 감사 보고서로 구성되며, 인증 기관 또는 유관 당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문서 및 기록 검토 보고서

문서 및 기록 검토 보고서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다음 사항의 평가:

- (a) 구조 및 크기,
- (b) IT 관리 시스템
- (c) 지점,
- (d) 검사 및 샘플링 이외의 하청 활동을 포함한 활동 유형
- (e) 조직도,
- (f) 품질 관리

1.2. 본사와 지사, 하청 실험실 간, 그리고 위원회, 회원국, 기타 통제 기관 및 기타 통제 기관 간의 정보 교환 절차 평가

1.3. 유기농 생산 규칙 및 관리에 관한 연합 법률과 관련하여 직원의 지식 및 자격 평가

1.4. 계약된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선택한 언어 체계와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 특히 인증 프로세스 또는 통제에 참여하는 직원을 위한 내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5.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교육 기간 동안 습득한 역량에 대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1.6. 통제 대상인 규정 (EU) 2018/848 제35조(7)항에 명시된 제품 범주 및 인정이 적용되는 제3국에 대한 직원의 경험 및 역량 평가, 여기에는 관련 검사원의 고용 상태 및 통제 기관과의 계약 관계도 포함됩니다.

1.7.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에 대한 통제 활동과 관련된 내부 절차의 평가(있는 경우) 및 운영자 그룹의 내부 통제를 위한 시스템을 통제하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검사원에게 필요한 특정 기술 및 교육

▼B

1.8. 제3국 각각에 대해 구축될 통제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설명 및 평가, 관련되는 경우 운영자 그룹에 대한 통제 특성 포함

1.9.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2. 현장평가 보고서

인증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유관 당국이 작성하는 현장 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1. 인증 결정이 내려지는 사무소의 평가 보고서로,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a) 인정을 요청한 규정 (EU) 2018/848의 제35조(7)에 명시된 모든 제품 범주의 파일 검사 결과 및 통제 기관이 이 규정의 제3장, 특히 제9조 및 제10조에 명시된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에 대한 통제 요구 사항을 올바르게 구현했다는 확인.

(b)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목록의 평가

(c) 검사 목적을 위한 위험 분석 절차의 평가,
사전 통보 없이 검사를 포함합니다.

(d) 샘플링 전략, 절차 및 방법론의 평가

(e) 위원회 및 기타 통제 기관 및 기타 통제 기관과의 의사소통 평가

(에프) 인증 및 통제 업무에 대한 성과와 역량에 관한 통제 및 인증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

(g)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확인
특히, 인정을 요청한 제3국에서 이 규정에 따른 통제 시스템, 특히 위험 평가, 추가 검사 또는 샘플링을 기반으로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물리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검사원, 계약된 사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문서(이러한 문서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h) 인정을 요청한 제3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역량과 역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특히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 구성원의 예상 수, 수출 제품의 양, 제품의 성격 및 원산지, 사업자 및 검사원 파일 평가 등을 고려합니다.

2.2. Part B에 따라 수행된 증인 감사의 결과로 다음 요소를 포함하는 증인 감사 보고서:

(a) 운영자, 감사 대상 검사원 및 인증 기관의 평가자의 이름

▼B

- (b) 증인 감사에 대한 일반 정보, 예를 들어 장소, 시간, 감사 계획 또는 당사자, 유기농 생산 규칙과 관련된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경험.
- (c) 검사 범위
- (d) 작업 계획, 작업 지침, 검사관에게 제공된 문서 및 자료와 같은 검사관의 준비 및 지식, 해당 제품 범주에 대한 검사관의 지식, 운영자의 유기 시스템 계획이나 운영자 그룹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견고성 평가, 이해 상충 확인, 규정 (EU) 2018/848에 대한 지식, 통제 시스템의 기능 또는 구현과 인증 프로세스에 관한 통제 기관의 내부 절차에 대한 지식.
- (e) 검사 기간의 관련성, 면접 평가, 이전 불이행 확인, 관련 정보 수집, 권한 및 분석 기술, 대화 및 질문 기술, 효과적인 언어 기술, 현지 농업 조건 및 농업 관행에 대한 지식, 해당 국가의 가공 관행 및 사회적 기술 등 검사관의 성과.
- (f) 시설/지주/단위에 대한 물리적 감사의 품질, 사용된 검사 체크리스트의 방법론 및 품질, 유기 시스템 계획에서 운영자가 제공한 정보, 질량 수지 및 추적성 감사의 견고성, 샘플링에 사용된 방법론 및 중요 구역 검사 등입니다.
- (g) 발견된 불일치 사항의 결과, 상태 및 적용된 시정 조치
- (h) 인증기관의 평가자가 확인하였으나 검사관이 발견하지 못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평가.
- (i) 실시된 퇴사 인터뷰의 질과 완전성
- (j) 감사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k) 발견된 불일치 사항 목록, 설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시정 조치 일정.
- (l) 운영자 그룹의 경우 내부 통제를 위한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제공하는 특정 섹션
- (m) 섹션 2.1에 따라 수행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역량 및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예를 들어 보고서 및 추가 증인 감사 결론을 포함하여 인증 기관 또는 유능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

파트 B

1. A 부분 2.2항에 언급된 증인 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인증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유능 당국에 의해 수행됩니다.
- (b)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증인이 진행하는 전체 활동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B (c) 물리적으로 수행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만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 외에 증인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인정을 요청하는 규정(EU) 2018/848 제35조(7)에 명시된 각 제품 범주에 대해. 인증 기관 또는 유능 기관에서 발견한 모든 불일치 사항은 각각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서 완전히 처리해야 하며, 인증 기관 또는 유능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b) 다른 제3국의 각 제품 범주에 대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두 개 이상의 제3국에 대해 요청하거나 이미 인정된 경우;

(c)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운영자 그룹을 인증하는 경우 운영자 그룹에서의 우선순위 문제로서.

3. 이사회 규정 제33조(3)항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경우

(EC) 제834/2007호(6) 및 규정 (EU) 2018/848 제57조(2)에 따라 작성된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부속서 A부 2.2항에 언급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 증인 감사의 결과입니다.

▼ M1-

(a) 인증기관 또는 유능기관이 다음 목적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규정(EU) 2018/848의 제46조에 따라 인정을 요청하는 각 제품 범주에 대해 규정(EC) 834/2007에 따른 인정

▼ B

(b)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규정(EC) 834/2007 제33조(3)항에 따라 인정되는 제3국에서.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증인 감사에 대해 인증 기관 또는 유능 기관은 모든 불일치 사항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의해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록 II

제4조에 언급된 연례 보고서에 대한 일반 및 특정 요구 사항

1. 연례 보고서는 제1조(2)항에 명시된 대로 기술 문서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 연례 보고서에는 연례 보고서의 목적을 위해 업데이트될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이름과 코드 번호, 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및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접 링크를 통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의 최신 목록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이사회 규정 (EC) No 834/2007 (2007년 6월 28일)

유기 생산 및 유기 제품의 표시(labeling)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 (EEC) No 2092/91을 폐지하는 규정

(OJ L 189, 2007.7.20, p. 1)

▼B

3. 연례 보고서의 목적을 위해 기술 자료는 다음 사항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a) 규정 (EU) 2018/848의 제35조(7)에 명시된 제품 범주별 제3국 또는 제3국에서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통제 활동(이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통제 대상이었던 사업자 및 사업자 그룹의 수와 그 구성원 수(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이 하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 경우 하청업체 포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3국 및 제품 범주별로 구분함.

(b)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이 규정의 제1조(2)(e) 또는 규정(EU) 2018/848의 제46조(2) 또는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기타 관련 문서에 따라 생산 규칙의 번역에 대한 필요한 업데이트를 수행했다는 약속.

(c)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설정한 인증 및 통제 시스템을 비롯한 내부 절차의 업데이트.

(d) 제17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

(e) 부록 I의 A 부분 2.1항에 언급된 대로 인증 결정이 내려지는 사무소의 연간 평가 보고서:

(i) 인증 기관 또는 유능 기관이 전년도에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규정(EU) 2018/848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능력에 대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만족스럽게 평가받았음을 보장합니다.

(ii)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규정(EU) 2018/848의 제46조(2) 및 (6)과 본 규정에 명시된 통제 요건, 조건 및 조치를 해당 기관이 인정받는 제3국에서 이행할 역량과 역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함.

(iii) 결과와 평가에 관한 연간 평가 보고서의 업데이트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파일 검사

— 불이행 사항 목록 및 인증된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수와 관련된 불이행 사항의 수

— 불이행 및 불만이 있는 경우, 불이행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시행한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불이행 사항 및 불만 처리

— 조치 목록 및 그 실행

— 위험 분석 절차

— 연간 위험 계획

— 샘플링 전략, 절차 및 방법론

— 절차의 변경 사항

▼B

— 다른 통제 기관, 통제 기관 및 위원회와의 정보 교환

— 검사 및 인증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직원의 역량

— 훈련 프로그램

— 신규 직원의 지식과 역량

— 목격한 활동의 효과성 및 신뢰성과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인증 기관 또는 유능 당국이 규정 (EU) 2018/848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요소.

(iv) 이전 연도에 인정 범위를 추가적인 제3국 또는 제품 범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각각의 새로운 제3국 또는 각각의 새로운 제품 범주에서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역량 및 역량을 확인합니다.

4. 연례 보고서에는 위반 사례와 취해진 조치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사전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 실제 검사의 횟수

(b) 사전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에서 수집한 샘플 수와 해당되는 경우 취한 조치.

(c) 제22조(1)항(a)에 언급된 의심, 불만 또는 조사 중 수집된 샘플의 수는 제21조(2)항(OFIS 사례)에 언급된 OFIS를 통해 통보됩니다.

(d) OFIS에서 의심되거나 확립된 불이행 사례 수

(e) 부록 IV에 규정된 유기 또는 전환제품의 불이행 분류에 따라 사소한 불이행, 심각한 불이행 및 심각한 불이행으로 구분하여 발견된 불이행의 수

(f) 불이행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에 대해 부록 IV에 언급된 조치를 취함.

5.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다른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을 인증한 경우, 수신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연례 보고서는 이전된 각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대해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a)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이름, 지리적 위치 및 이전 인증 번호.

(b)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이름

(c) 제어 파일의 전송 날짜

(d)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요구한 공개된 불이행 사항 및 조치의 목록 및 특성(있는 경우)

▼B

(e)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시행한 조치와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시정 조치가 올바르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검사 날짜.

(f)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OFIS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6. 제8조에 언급된 고위험 제품에 관하여는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고위험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 목록

(b) 각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대해:

(i) 수행된 검사, 각 검사 날짜를 표시함

(ii) 수행된 샘플링 및 분석

(iii) 불일치 사항 발견

(iv) 적용된 조치

(v)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을 변경한 각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의 경우, 이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보고서에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적용된 시정 조치 및/또는 제재.

(c) 불일치 사항이 나타난 각 위탁물에 대해:

(i)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증명서에 대한 참조

(ii) 승인되지 않은 물질의 잔류물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샘플링 분석 결과 개요

(iii) 위탁물에서 허가받지 않은 물질의 혼합이나 잔류물이 발견된 경우 통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이 취한 조사 및 후속조치. 여기에는 위탁물에 대한 결정과 운영자가 시정조치를 취했다는 확인이 포함됩니다.

7. (EU) 2018/848 규정 부속서 II 제1부 1.8.5.2항에 따라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 사용에 대한 승인의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학명 및 일반명(일반명 및 라틴어명)

(b) 다양성,

(c) 면제된 수 및 면제된 종자의 총 중량 또는 식물의 수.

(d) 승인을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 그룹의 수.

8. 규정 (EU) 2018/848 부속서 II 제2부 1.3.4.3 및 1.3.4.4에 따라 유기농 가축 종(소, 말, 양, 염소, 돼지 및 사슴, 토끼, 가금류) 각각에 대해 부여된 면제의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과학적 및 일반명(일반명 및 라틴어명, 즉 종과 속)

(b) 품종 및 계통,

▼B

(c) 생산 목적: 육류, 우유, 계란, 이중 목적 또는 번식.

(d) 면제된 동물의 수와 면제된 동물의 총 수.

(e) 면제 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 그룹의 수.

9. 규정(EU) 2018/848 부속서 II 제3부 3.1.2.1항에 따라 비유기 양식어 미성숙어의 사용을 위해 부여된 승인의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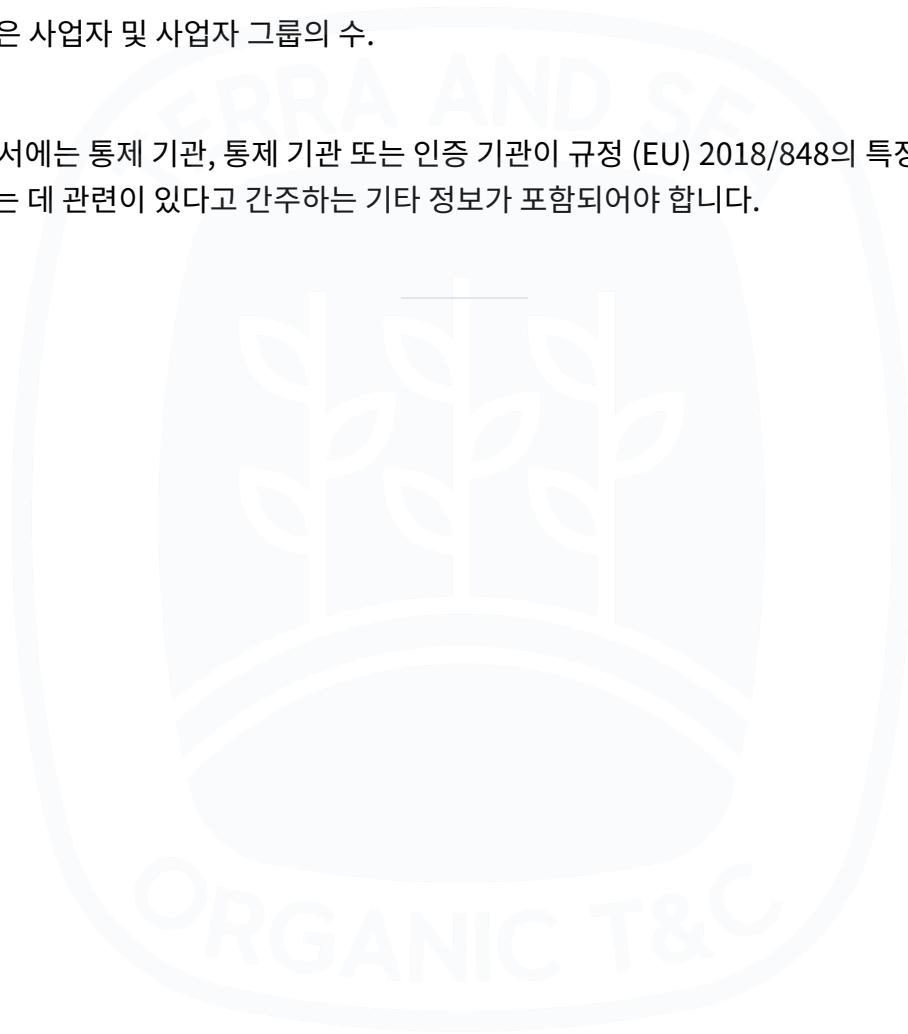
(a) 종 및 속(일반명 및 라틴어명)

(b) 해당되는 경우 품종 및 계통

(c) 각 종에 대한 총 면제 수와 미성년 수.

(d) 승인을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 그룹의 수.

10. 연례 보고서에는 통제 기관, 통제 기관 또는 인증 기관이 규정 (EU) 2018/848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록 III

제21조(2)에 언급된 OFIS 템플릿

의심 또는 확립된 불이행에 대한 표준 국제 통지에 대한 표준 회신을 위한 템플릿

A. 조사

- 1) 조사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담당했던 관리당국 및/또는 인증기관은 어디인가?:
- 2) 관련된 여러 국가(해당되는 경우)에서 운영자, 관할 당국 또는 관리당국 및/또는 인증기관 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3) 어떤 조사 방법/절차가 사용되었는가?:

예를 들어, 해당 운영자에 대해 특정 통제가 수행되었는가?:

샘플이 채취되고 분석되었는가?:

- 4) 조사 결과는 무엇인가?:

(해당되는 경우) 검사/분석 결과는 무엇인가?:

부적합/부적합 의심/기타 문제의 원인이 규명되었는가?:

부적합/부적합 의심/기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5) 오염/부적합/부적합 의심/기타 문제의 원인 및 관련 행위자의 책임이 명확히 확인되고 확정되었는가?:

오염/부적합/기타 문제의 원인 및 관련 행위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6) 확인된 운영자가 지난 3년간 다른 부적합/부적합 의심/기타 문제 사례에 연루된 적이 있는가?:

지난 3년간 해당 운영자와 관련된 부적합/부적합 의심/기타 문제 사례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B. 조치 및 제재

- * 1) 어떤 예방 및 시정 조치가 취해졌는가?
(예: EU 시장 및 제3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유통/유회와 관련하여):

- * 2) 부적합/부적합 의심/기타 문제 발생 시, 해당 운영자 및/또는 제품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조치 방식은 무엇인가? (서면 통보, 경고 등):

생산자/가공자의 인증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었는가?:

조치 시행일(해당되는 경우) (DD/MM/YYYY):

조치 기간(해당되는 경우) (개월):

조치를 채택 및 시행한 관리당국 및/또는 인증기관:

- 3) 해당 운영자에 대해 추가 검사가 계획되어 있는가?:

- 4)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당국 또는 인증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기타 조치는 무엇인가?:

(¹) 규정 (EU) 2018/848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본 규정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B

C. 기타 정보

D. 첨부자료

답변 의견:

연락 담당자:

(*) 필수 항목



부록 IV

제22조(3)항에 언급된 조치 목록

A부

측정 카탈로그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요소

1. B 부분에 따르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제22조(3)항 (b)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불일치 사례를 경미, 중대 또는 중대 위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 다음의 경우 불이행 사례가 사소한 경우입니다.

- (i) 운영자가 시행한 예방 조치가 비례적이고 적절하며, 운영자가 시행한 통제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평가에 따라 효율적이다.
- (ii) 불이행이 유기제품이나 전환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iii) 추적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에서 영향을 받은 제품을 찾아낼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유기농 생산과 관련하여 연합 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b) 다음의 경우 불이행이 주요한 경우입니다.

- (i) 예방 조치가 비례적이고 적절하지 않으며, 운영자가 시행한 통제가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비효율적입니다.
- (ii) 불이행이 유기제품이나 전환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iii) 운영자가 사소한 불일치 사항을 적시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iv) 추적 가능성을 통해 공급망에서 영향을 받은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이 유기농 생산과 관련하여 연합 내 시장에 출시되는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c) 다음의 경우 불이행 사례가 중요합니다.

- (i) 예방 조치가 비례적이고 적절하지 않으며, 운영자가 시행한 통제가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비효율적입니다.
- (ii) 불이행이 유기제품이나 전환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iii) 운영자가 이전의 주요 불일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거나 기타 범주의 불일치 사항을 반복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 (iv) 영향을 받은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의 정보가 없습니다.
공급에 있어서 해당 제품이 유기 생산과 관련하여 연합 내 시장에 출시될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B

2.조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나열된 위반 사례 범주에 대해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비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의 유형	조치
경미	수정에 대한 시간 제한 내에 운영자가 작업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대	(EU) 2018/848 규정 제42조(1)항에 따라 전체 로트 또는 p의 라벨 및 광고에 유기농 생산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규정(EU) 2018/848 제42조(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제3국에 배치하는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새로운 변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범위 제한 예방 조치 및 통제 준수의 구현 개선
치명적	(영향을 받는 전체 로트의 라벨 및 광고에 유기농 생산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규정(EU) 2018/848의 제42조(1)항에 따름 규정(EU) 2018/848 제42조(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제3국에 배치하는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새로운 변환 기간 필요 인증서 범위 제한 인증서 정지 인증서 철회

파트 B

비준수 사례 목록 및 해당 분류는 조치 카탈로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부적합 사항	유 형
투입량과 산출량 계산(물질수지, mass balance) 간의 중대한 불일치	중대
규정 (EU) 2018/848 준수를 입증하는 기록 및 재무 기록의 부재	치명적
불완전한 기록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정보 누락	치명적



부적합 사항	유 형
유기 제품 인증과 관련된 문서의 위조	치명적
등급이 하향된 제품을 유기 제품으로 고의 재표시	치명적
유기 제품과 전환기 제품 또는 비유기 제품을 고의로 혼합	치명적
규정 (EU) 2018/848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물질 또는 제품을 고의로 사용	치명적
GMO를 고의로 사용	치명적
운영자가 관리당국 또는 인증기관의 점검 대상 시설에 대한 접근, 장부(재무 기록 포함)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샘플 채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치명적

